

## 目 次

東洋古典譯註叢書を 발간하면서

解題

凡例

參考書目

目次

蘇文公文抄引 《蘇文公文抄》의 서문 / 33

蘇文公本傳 蘇文公의 傳記 / 35

### 卷1 上書·狀

01. 上仁宗皇帝書 仁宗皇帝께 올린 글 / 37
02. 修禮書狀 禮書を 修撰할 때에 올린 글 / 70

### 卷2 書

01. 上文丞相書 文丞相에게 올린 글 / 76
02. 上富丞相書 富丞相에게 올린 글 / 82
03. 上韓樞密書 韓樞密에게 올린 글 / 88
04. 上田樞密書 田樞密에게 올린 글 / 97
05. 上韓昭文論山陵書 韓昭文에게 山陵을 논하여 올린 글 / 107

### 卷3 書

01. 上王長安書 王長安에게 올린 글 / 115
02. 上余青州書 余青州에게 올린 글 / 118
03. 上歐陽內翰書 歐陽內翰에게 올린 글 / 124
04. 再上歐陽內翰書 歐陽內翰에게 두 번째 올린 글 / 133
05. 三上歐陽內翰書 歐陽內翰에게 세 번째 올린 글 / 137
06. 上張侍郎第二書 張侍郎에게 올린 두 번째 글 / 140
07. 上韓舍人書 韓舍人에게 올린 글 / 143

### 卷4 論

01. 易論 《易》에 대한 논문 / 147
02. 禮論 禮에 대한 논문 / 154

- 03. 樂論 樂에 대한 논문 / 158
- 04. 詩論 <詩>에 대한 논문 / 164
- 05. 書論 <書>에 대한 논문 / 168
- 06. 春秋論 <春秋>에 대한 논문 / 174

#### 卷5 論

- 01. 史論序 <歷史에 대한 논문>의 서문 / 184
- 02. 史論 上 歷史에 대한 논문 上 / 185
- 03. 史論 中 歷史에 대한 논문 中 / 190
- 04. 史論 下 歷史에 대한 논문 下 / 198
- 05. 諫 上 諫言에 대한 논문 上 / 205
- 06. 諫 下 諫言에 대한 논문 下 / 219
- 07. 明論 밝음에 대한 논문 / 222
- 08. 辨奸論 奸邪함을 분별함에 대한 논문 / 226

#### 卷6 論

- 01. 嚳妃論 帝嚳의 妃에 대한 논문 / 233
- 02. 管仲論 管仲에 대한 논문 / 238
- 03. 審勢論 天下의 形勢를 살피는 것에 대한 논문 / 244
- 04. 審敵論 敵을 살피는 것에 대한 논문 / 257

#### 卷7 權書

- 01. 權書序 <權書>의 서문 / 274
- 02. 心術 마음 다스리는 법 / 275
- 03. 法制 군대를 統制하는 법 / 280
- 04. 強弱 強弱의 활용 / 285
- 05. 攻守 攻擊과 守備 / 290
- 06. 用間 用間에 대해 논함 / 296
- 07. 孫武 孫武의 실책을 논함 / 300
- 08. 子貢 子貢의 계책에 대해 논함 / 306
- 09. 六國 六國에 대해 논함 / 311
- 10. 高帝 漢 高祖를 논함 / 316
- 11. 項籍 項籍을 논함 / 323

#### 卷8 衡論

- 01. 衡論序 <衡論>의 서문 / 331
- 02. 遠慮 먼 장래에 대해 생각함 / 332

- 03. 御將 將帥를 부림 / 340
- 04. 任相 宰相 임용에 대해 논함 / 347
- 05. 重遠 京師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을 중시함 / 354
- 06. 養才 人才를 양성함 / 362

### 卷9 衡論

- 01. 廣士 선비를 널리 구함 / 369
- 02. 申法 法에 대해 진술함 / 376
- 03. 議法 法을 논함 / 384
- 04. 兵制 兵制를 논함 / 391
- 05. 田制 田制를 논함 / 400

### 卷10 記·說·引·敘

- 01. 彭州圓覺禪院記 彭州의 圓覺禪院에 대한 기문 / 409
- 02. 張益州畫像記 張益州 畫像에 대한 기문 / 413
- 03. 木假山記 木假산에 대한 기문 / 419
- 04. 蘇氏族譜亭記 蘇氏 族譜亭에 대한 기문 / 421
- 05. 名二子說 두 아들의 이름에 관한 글 / 425
- 06. 仲兄文甫說 형의 字를 文甫로 지은 데 대한 글 / 427
- 07. 送石昌言爲北使引 北使가 된 石昌言을 전송하는 서문 / 430
- 08. 族譜引 族譜의 서문 / 434
- 09. 族譜後錄 族譜 뒤에 기록함 / 437

### 附錄

- 1. 韓國 古文獻 所載의 蘇洵 關聯資料 / 444
- 2. 韓·中·日 蘇洵 研究圖書 및 論文 目錄 / 451

宋大家蘇文公文抄 卷1

## 上書·狀

- 01. 上仁宗皇帝書\* 仁宗皇帝께 올린 글

\* 蘇洵이 지은 22편의 글을, 歐陽脩가 선발하여 채택하도록 상부에 청하니, 仁宗이 策論을 시험하도록 명하였다. 그때인 嘉祐 3년(1058)에 蘇洵이 당시 政事에 폐단이 되는 열가지의 일을 올린 글이다.

此書反覆數千言이 如抽藕中之絲하여 段段有情緒하여 可愛하고 而中間指陳時政處에 又往往深中宋嘉祐間事宜하니 老泉一生文章政事를 略見於此矣라

이 글은 수천 마디의 말을 반복한 것이 연뿌리에서 실을 뽑는 것 같아 단락 단락이 정서가 있어 사랑할 만하고, 글 중간에 당시의 정사를 지적하여 편 곳에는 또 이따금 宋나라 嘉祐 연간의 일의 형편에 깊이 적중하니, 老泉의 일생의 文章과 政事를 대략 이 글에서 볼 수 있다.

前月五일에 蒙本州錄到中書筓子하고 連牒臣하오니 以兩制<sup>1)</sup>議上翰林學士歐陽脩奏臣所著 權書衡論幾策二十二篇하여 乞賜甄錄이니이다 陛下過聽하사 召臣試策論舍人院하여 仍令本州發遣臣赴闕하시니이다

지난달 5일에 本州(眉州) 관서에서 中書省의 筓子를 받고 이어서 신을 불러들이는 공문을 받자오니, 翰林學士 歐陽脩가 신이 지은 <權書>, <衡論>, <幾策> 등 22편을 兩制에서 의논하여 심사해서 채택하기를 청하는 글을 올려서입니다.

폐하께서 과분하게 들으시고 신을 불러 舍人院에서 策論을 시험하기 위하여 本州에 명령하여 신을 대궐에 이르러 하셨습니다.

1) 兩制 : 宋代의 內制와 外制를 합하여 兩制라 칭한다. 翰林學士가 황제의 誥命을 관장하는 것을 내제라 하고, 中書舍人과 知制誥가 황제의 高명을 관장하는 것을 외제라 한다.

臣本田野匹夫로 名姓不登於州閭니이다 今一旦卒然被召하니 實不知其所以自通於朝廷하여 承命悸恐하여 不知所爲니이다 以陛下躬至聖之資하시고 又有群公卿之賢과 與天下士大夫之衆하시니 如臣等輩는 固宜不少하여 有臣無臣이 不加損益이니이다 臣不幸有負薪之疾<sup>1)</sup>하여 不能奔走道路하며 以副陛下搜揚之心하오니 憂惶負罪하여 無所容處니이다

臣은 본래 시골의 匹夫로 이름이 고을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니다. 지금 하루아침에 갑자기 부름을 입으니 실로 스스로 朝廷에 통할 바를 알지 못하여, 命을 받고 두려워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폐하께서는 몸소 지극히 성스러운 자질을 지니셨고, 또 못 公卿들 중에 어진 이와 천하 사대부들이 있어서 신과 같은 무리는 참으로 적지 아니하여, 신이 있고 없음이 損益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신은 불행하게도 병이 나서 분주히 길을 오가며 폐하께서 찾아 구하여 선발하는 마음에 부응하지 못하오니, 걱정되고 황공하여 죄를 지은 마음에 몸 둘 바가 없습니다.

1) 負薪之疾 : 떨나무를 져던 피로로 난 병이라는 뜻이나, 古代에 士가 능력이 부족할 때에 스스로 병을 일컬어 사양하는 謙辭이다. <禮記> <曲禮 上>에 “임금께서 士로 하여금 활을 쏘게 할 때에 쏘지 못하면 병으로 사양하여 말하기를 ‘某는 負薪의 병이 있습니다.’라고 아뢰었다.[君使士 射不能則辭以疾 言曰 某有負薪之疾]”라는 기록이 보인다.

臣本凡才로 無路自進이라 當少年時하여 亦嘗欲僥倖於陛下之科擧나 有司以爲不肖하여 輒以擯落하여 蓋退而處者가 十有餘年矣니이다 今雖欲勉強扶病戮力이나 亦自知其疏拙하여 終不能合有司之意하니 恐重得罪하여 以辱明詔니이다 且陛下所爲千里而召臣者는 其意以臣

爲能有所發明하여 以庶幾有補於聖政之萬一이요 而臣之所以自結髮<sup>1)</sup>讀書하여 至于今茲히 犬馬之齒<sup>2)</sup>幾已五十이로되 而猶未敢廢者는 其意亦欲效尺寸於當時하여 以快平生之志耳니 이다 今雖未能奔伏闕下하여 以累有司나 而猶不忍默默하고 卒無一言而已也니이다 天下之事에 其深遠切至者는 臣自惟疏賤하여 未敢遽言이나 而其近而易行하고 淺而易見者를 謹條爲十通하여 以塞明詔하노이다

신은 본래 평범한 재주로 스스로 나아갈 길이 없어 소년 시절에 또한 일찍이 폐하께서 시행하시는 과거시험에 운 좋게 합격하기를 바랐으나, 有司가 재목감이 아니라고 여겨 번번이 떨어져서 물러나 생활한 지가 10여 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비록 애써 병을 무릅쓰고 부지런히 힘을 다하고자 하나, 또한 스스로 변변치 못하여 끝내 有司의 뜻에 능히 부합하지 못함을 아니, 거듭 죄를 얻어 밝은 詔勅을 더럽히게 될까 두렵습니다.

또한 폐하께서 천릿길에 신을 부르신 것은, 그 뜻이 신이 능히 功績을 이를 만하다고 여겨서 성스러운 政事에 만에 하나라도 보탬이 있기를 바라서일 것입니다.

신이 結髮하고부터 책을 읽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신의 나이가 이미 50인데도 아직도 감히 學業을 폐하지 아니한 것은, 그 뜻이 또한 당시에 조금이라도 공헌하여 평소의 뜻에 기쁘고자 해서일 따름입니다.

지금 비록 달려가 대궐에 엎드려서 유사를 번거롭게 할 수는 없으나, 여전히 차마 입을 다물고 끝내 한마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일 뿐입니다. 천하의 일에서 그 깊고 遠大하며 切實하고 至極한 것은 신이 스스로 생각건대 微賤하여 감히 성급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까워서 쉽게 행할 수 있고 알아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을 삼가 열 개의 조목으로 지어 밝은 詔書에 답하옵니다.

- 1) 結髮 : 상투를 틀거나 쪽을 찌는 것으로 옛날 중국에서는 남자가 20세가 되면 결발하여 成人이 되었다. 蘇洵은 늦은 나이(27세)에 비로소 發憤하여 學問을 성취하였다.
- 2) 犬馬之齒 : 개나 말처럼 부질없이 나이만 먹는다는 말로 자기 나이에 대한 謙辭이다.

其一曰 臣聞 利之所在에 天下趨之라하니이다 是故로 千金之子가 欲有所爲면 則百家之市에 無寧居者니이다 古之聖人은 執其大利之權하여 以奔走天下하여 意有所向이면 則天下爭先爲之니이다 今陛下는 有奔走天下之權이나 而不能行하시니 何則이니잇가 古者에 賞一人而天下勸이러니 今陛下는 增秩拜官하여 動以千計로되 其人이 皆以爲己所自致라하여 而不知戮力하여 以報上之恩하니 至於臨事하여 誰當效用이리잇가 此는 由陛下輕用其爵祿하여 使天下之士로 積日持久而得之니이다 譬如傭力之人이 計工而受直(치)하여 雖與之千萬이나 豈知德其主哉리잇가 是以로 雖有能者라도 亦無所施하여 以爲謹守繩墨하면 足以自致高位니이다 官吏繁多하여 溢于局外하여 使陛下皇皇汲汲求以處之하여 而不暇擇其賢不肖하여 以病陛下之民하고 而耗竭大司農<sup>1)</sup>之錢穀하니 此는 議者所欲去而未得也니이다

그 첫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은 듣건대, 利益이 있는 곳에 천하가 달려간다고 합니다. 이런 까닭으로 富裕한 집의子弟가 이익 되는 일을 하고자 하면 백 집의 市場에 편안히 있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옛날의 聖人은 큰 이익의 권한을 잡고서 천하를 분주히 하여 뜻하는 바가 있으면 천하가 다투어 먼저 하였습니다.

지금 폐하는 천하를 분주히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서 쓰지 아니하시니 어찌서이겠습니까? 옛날에는 한 사람에게 賞을 주어서 천하를 부지런히 힘쓰게 하였는데, 지금 폐하께서는

俸祿을 올리고 官職에 임명하여 번번이 천 명에 이르지만, 그 사람들은 모두 자기 스스로 이룬 것이라 하여 힘을 다하여 임금의 은혜에 보답할 줄을 알지 못하니, 일을 처리함에 이르러서 누가 노력을 다 바치겠습니까?

이는 폐하께서 그 爵祿을 가벼이 써서 천하의 선비로 하여금 날짜만 보내어 오래 버티면 얻을 수 있게 한 데서 연유되었습니다. 비유하자면 고용된 사람이 성과를 셈하여 품삯을 받는 것과 같아서, 비록 천만 금을 주더라도 어찌 그 주인의 덕인 줄을 알겠습니까? 이 때문에 비록 能力이 있는 사람이라도 행하는 바가 없이 삼가 法規만 지키면 저절로 높은 자리에 이를 수 있다고 여깁니다. 관리가 繁多하여 局外에 넘쳐서 폐하께서 황급히 구하여 일을 처리하느라 그 賢不肖를 가릴 겨를이 없게 하여, 폐하의 백성을 병들게 하고 大司農의 錢穀을 소모하니, 이것은 의논하는 자들이 없애고자 하나 하지 못하는 바입니다.

- 1) 大司農 : 본래 漢代에 국가 財政經濟를 관장하는 官名이나, 宋代에는 조정에서 재정을 관장하는 機構인 三司(戶部·度支·鹽鐵)를 가리킨다.

臣竊思之하니 蓋今制馭天下之吏에 自州縣令錄幕職<sup>1)</sup>으로 而改京官者가 皆未得其術이라 是以로 若此紛紛也니이다 今雖多其舉官<sup>2)</sup>而遠其考하며 重其舉官之罪나 此는 適足以隔賢者 而容不肖니이다 且天下無事엔 雖庸人이나 皆足以無過로되 一旦改官이면 無所不爲니이다 彼其舉者曰 此廉吏요 此能吏라하나 朝廷은 不知其所以爲廉與能也니이다 幸而未有敗事면 則長爲廉與能矣니 雖重其罪나 未見有益하고 上下相蒙하여 請託公行하니이다 涖官六七考하고 求舉主五六人은 此誰不能者리잇가

신이 가만히 생각하니, 지금 천하의 官吏를 통제하여 다름에 知州와 縣令, 錄官과 幕職에서 京官으로 바꾸는 것이 모두 그 방법을 얻지 못하여, 이 때문에 이와 같이 어지럽게 되었습니다. 지금 비록 그 舉官(추천자) 수를 많게 하고 人事考課를 심도 있게 하며 그 舉官의 죄를 무겁게 하고 있으나, 이는 다만 賢者를 멀리하고 不肖한 자를 받아들이는 것일 뿐입니다. 또한 천하에 일이 없을 때는 비록 평범한 사람이라도 모두 잘못이 없을 수 있지만 일단 官職이 바뀌게 되면 못하는 짓이 없습니다.

저 薦學한 사람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清廉한 관리요, 이 사람은 能力 있는 관리다.”라고 하나, 조정에서는 청렴하고 능력이 있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요행히 실패한 일이 있지 아니하게 되면 오래도록 청렴하고 능력 있는 관리로 여겨질 것이니, 비록 천거한 사람의 죄를 무겁게 하나 유익함을 보지 못하고, 위아래가 서로 덮어주어 請託이 공공연하게 행하여지게 됩니다. 관직에 있을 때에 예닐곱 차례 시험을 거치고, 추천해주는 대여섯 사람을 구하는 것은 누군들 하지 못하겠습니까?

- 1) 州縣令錄幕職 : 州는 宋代에 州의 장관인 知州를, 縣令은 縣의 장관을, 錄은 지방의 관직인 司錄參軍과 錄事參軍을, 幕職은 지방의 관직인 幕職官을 이른다.
- 2) 舉官 : 官吏를 推薦할 때에 책임지고 保證해주는 사람으로 즉 舉主이다. 宋制에 어떤 자리의 人材를 선발할 적에 일정한 직책에 있는 자가 지원자를 보증하는 제도로, 임용 후 중대한 過失이나 罪行이 있으면 지원자와 함께 舉主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였다.

臣愚以爲舉人者는 當使明著其迹하여 曰 某人廉吏也라 嘗有某事以知其廉이요 某人能吏也라 嘗有某事以知其能이라하니이다 雖不必有非常之功이나 而皆有可紀之狀이니 其特曰 廉能而已者

는 不聽이니이다 如此則夫庸人雖無罪나 而不足稱者는 不得入其間하여 老於州縣이라도 不足甚惜이요 而天下之吏가 必皆務爲可稱之功하여 與民興利除害가 惟恐不出諸己니이다 此는 古之聖人이 所以驅天下之人하여 而使爭爲善也니이다 有功而賞하고 有罪而罰은 其實一也니이다 今降(강)官罷任者가 必奏曰 某人有某罪하니 其罪當然이라한 然後에 朝廷舉而行之니이다 今若不著其所犯之由하고 而特曰 此不才요 貪吏也면 則朝廷安肯以空言而加之罪며 今又何獨至於改官하여 而聽其空言哉리잇가 是는 不思之甚也니이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남을 薦舉하는 자는 마땅히 그 사람의 行績을 밝게 드러내어 “某人은 清廉한 官吏다. 일찍이 어떤 일로써 그 청렴함을 알 수 있고, 모인은 能力 있는 관리다. 일찍이 어떤 일로써 그 능력을 알 수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비록 반드시 특별한 功績은 있지 않더라도 모두 기록할 만한 行績은 있으니, 다만 “청렴하고 능력이 있다.”고만 말하는 것은 듣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 庸人으로서 비록 죄는 없으나 稱讚하기에 부족한 사람은 그 대열에 들어가지 못하여 고을에서 늙더라도 심히 애석하지는 아니할 것이요, 천하의 管理가 반드시 모두 稱頌받을 만한 功績을 이루도록 힘써서 백성과 함께 이로움을 일으키고 해로움을 없애는 것이 오직 자기에게서 나오지 아니하게 될까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 聖人이 천하 사람을 몰아서 다투어 善을 행하도록 했던 방법입니다.

功이 있으면 賞을 주고 罪가 있으면 罰을 주는 것은 그 실상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 官職을 降等하고 職任을 科하는 자가 반드시 아뢰어 “某人은 무슨 죄가 있으니 그 죄가 당연하다.”고 한 연후에 朝廷에서 듣고서 이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만약 죄를 범한 연유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다만 “이 사람은 재능도 없고 탐하는 管理이다.”라고만 말한다면 조정이 어찌 기꺼이 근거 없는 말로써 죄를 줄 것이며, 지금 또 어찌 유독 官職을 바꾸는 데 이르러서 그 근거 없는 말을 들겠습니까. 이는 思慮하지 않음이 깊은 것입니다.